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6. 14.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황 규 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19년 6월 4일

3. 제정이유

충청북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라.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마. 교육균형발전 예산의 규모(안 제6조)

바. 지원계획 등 심의(안 제7조)

사. 평가(안 제8조)

아.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시·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 지원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충북 도내에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교육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교육균형발전 정책 마련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세부 사업과 안 제6조에 예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공고히 하고 예산지원 계획수립과 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안 제7조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 수립, 지원예산규모,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안 제8조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게 한 것은 교육균형발전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점검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과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 내게 하는 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담고 있듯이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타당한 제정이라 판단됨.